

『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에 대한 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국민의힘 서초구 제3선거구 출신 고헌민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‘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’에 규정되어 있는 강의실 면적 제한 기준은 1995년

에 처음 수립된 후 28년째 바뀌지 않는 등 그동안 사회 환경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

- 실제로 현재 서울 관내 다수의 학원 현장에서는 수강신청 및 자리선점 경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강의실 내 학생 과밀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.
 - 이에 본 개정안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학원 강의실 단위면적 최대 상한 기준을 삭제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및 안전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.
 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,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-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